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1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강선영 · 서명옥 · 구자근
유상범 · 최수진 · 성일중
유용원 · 이달희 · 나경원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급정년

소장: 6년

준장: 6년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장성급”을 “중장 이상의 장성급”으로 한다.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역되거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를 “전역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을 “진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정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 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보직 및 전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③ · ④ (생략)</p> <p>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p> <p>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u>전역되거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u>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u>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p> <p>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역된다.</u>----- ----- ----- -----.</p> <p>③ -----<u>진급</u>----- ----- ----- -----.</p>
--	---